



제 432국회 (임시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기초법학 교과목에 대한 필수교과목으로의 개설 의무화 >
■ 송석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514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검토의견	3
1. 기초법학 교과목에 대한 필수교과목으로의 개설 의무화	3
2. 개정안 부칙에 대한 검토	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송석준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5. 11. 24.
3. 회 부 일 : 2025. 11. 25.

II. 제안이유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모토로 하고 있음에도, 현재와 같이 변호사시험에 의해 법학 교육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법의 이념과 가치에 대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법으로는 학점이수제(일정한 범위의 과목 중 학생이 선택하는 과목을 일정 학점 범위에서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현행법 제2조가 제시한 교육이념, 즉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초법학 과목(법철학, 법사학, 법사회학 등)을 필수교과목으로 개설하도록 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개선하고자 함.

이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기초법학 과목 및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학점이수제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0조).

Ⅲ. 주요내용

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 기초법학 과목을 필수교과목으로 포함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초법학 과목의 필수교과목 개설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정하고 경과규정을 둠(안 부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

IV. 검토의견

1. 기초법학 교과목에 대한 필수교과목으로의 개설 의무화

가. 개정안의 요지

- ☐ 개정안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기초법학 과목을 필수교과목으로 개설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교육과정) ① (생략) ②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설하여야 하는 교과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단서 신설></u>	제20조(교육과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다만, 사회정의와 인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등 법의 이념과 가치에 관한 기초법학 교과목은 필수교과목으로 개설하여야 한다.</u>

나. 검토의견

-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2009년 도입)는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사람에게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음.

- 그런데 현재의 로스쿨 재학생들은 유급의 위험이나 변호사시험에서 합격을 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부담감,¹⁾ 변호사 자격 취득 이후 취업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학점취득과 변호사시험 준비에 적합한 과목 위주로 이수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으며, 실무과목을 소홀히 하거나 변호사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거나 시험과목이 아닌 과목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음.²⁾
- 이로 인하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변호사시험과 연관성이 적은 기초법학의 경우에는 대다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강인원 부족으로 폐강되거나 기초법학 전공 전임교수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기초법학 교과목을 필수교과목으로 개설하도록 함으로써 기초법학 과목에 대한 학생의 수강 선택을 제도적으로 유도하고 기초법학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음.³⁾
- 이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이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

1) 응시자 대비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제1회 87.15%, 제2회 75.17%, 제3회 67.63%, 제4회 61.11%, 제5회 55.20%, 제6회 51.45%로 점차 떨어졌고, 그 이후로 제13회에 이르기까지 50%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2)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과 법치주의의 위기와 대응방안」, 『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공동 학술대회 자료집』, 2024.7.26.

3) <교육과정의 기본구조>

범 주	주요 과목
기본법학 과목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전문법학 과목	노동법, 환경법, 지식재산권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국제법 등
기초법학 과목	법철학, 법조윤리, 법사학, 법사회학, 법학방법론, 젠더법학, 인권법학 등
실무법학 과목	법률정보 조사, 법문서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

한 직업윤리관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⁴⁾

또한, 기초법학 과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배출되는 법조인은 단순한 기술적 법률전문가에 머물지 않고 헌법적 가치 판단, 공익적·사회적 시각, 윤리적 결단 능력을 갖춘 법조인으로 양성될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임.

□ 다만, 「고등교육법」 제21조 및 제35조에서는 대학(원)의 교육과정 및 학위수여를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등⁵⁾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대학의 자율사항으로 특정 분야의 과목을 의무화하는 경우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대학 현장의 지적이 있음.

또한, 변호사시험을 통해서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구조 하에서는 기초법학 과목을 필수교과목으로 의무화하더라도 학생들은 해당 과목을 여전히 시험에 도움이 안되는 과목으로 인식하여 형식적으로 수강하거나 단순히 성적 관리 과목으로 참여할 가능성 있음.

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교육이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의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

5) 「고등교육법」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①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35조(학위의 수여) ②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해당 과정의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 개정안에 대하여 교육부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위해 법의 이념과 가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지만,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대학의 자율사항이며, 개설된 기초법학과목이 필수교과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오히려 대학의 다양한 기초법학 교과목 개설이 현재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⁶⁾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는 변호사시험 제도의 근본적 변화 없이 기초법학 교과목을 필수교과목으로 개정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의견임.
- 고려대학교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개별 여건에 따라 기초법학 및 전문 선택법 분야의 과목개설 정도와 필요충분한 교원의 확보 상황 등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며, 이화여대는 변호사시험 체제에서 자율적으로 기초법학에 관한 교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교육과정을 만들 가능성이 없으므로, 기초법학을 법정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6) 개설되는 기초법학 교과목이 필수교과목이 되는 경우 필수교과목 대상이 줄어들도록 대학은 기초법학 교과목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있음.

예시) 기초법학 과목 5개 개설 → 필수교과목 5개, 기초법학과목 2개 개설 → 필수교과목 2개

2. 개정안 부칙에 대한 검토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의 부칙은 제1조의 시행일과 제2조의 적용례 및 제3조의 경과 조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행일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법 시행 이후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부터 개정안을 적용하고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사람은 종전의 교육과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 부칙 조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수학점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은 이 법을 시행한 해의 다음 학년도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수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교육과정에 따른다.

나. 검토의견

□ 안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규정하면서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일을 특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의 통과여부에 대해 명확한 시점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기초법학 분야 과목에 대한 구체적인 논

의나 학점이수제의 구체적 운영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부족하므로, 개정안 통과시점을 고려하여 시행령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두면서 시행일을 규정할 필요가 있겠음.

□ 한편, 적용례는 시행일만으로는 새로 시행되는 법률을 구체적으로 어느 대상이나 어떤 경우부터 적용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두는 것이며,

경과조치는 법률의 개정이 있는 경우 구법에 대해 형성된 신뢰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구법의 효력을 시행일 이후까지 미치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적용례와 경과조치를 함으로써 기초법학과목을 필수교과목으로 의무화할 경우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용대상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기존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문 의 처
02)6788-5188